

# 청 주 지 방 법 원

## 제 1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8고합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  
검 사 최현주(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8. 7. 20.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1.경 청주시 흥덕구 \*\*로 \*\*\*번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의 점)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_\_\_\_\_

                         판사            정현우 \_\_\_\_\_

                         판사            엄혜수 \_\_\_\_\_